

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7. 2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소규모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영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소 사육 가능 두수를 10마리 이하로 상향 조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“소, 젓소, 돼지, 말, 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”를 “젓소, 돼지, 말, 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소 : 10마리 이하

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4호가목 중 “소, 젖소, 돼지, 말, 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”를 “젖소, 돼지, 말, 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소 : 10마리 이하

수정안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--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	제1조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가축"이란 소·돼지·말·닭·젓소·오리·양·사슴·개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 1. "가축"이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	제2조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

2. "가축분뇨"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(糞)·요(尿)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·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. 3. "배출시설"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<u>축사·운동장·착유실·먹이방·분만실</u>을 말한다. 4. "퇴비"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「<u>비료관리법</u>」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<u>비료공정규격</u> 중 퇴비의 <u>공정규격</u>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 5. "액비"란 가축분뇨를 <u>액체상</u>으로 발효	<u>한다.</u>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</u> <u>된</u> ----- ----- -.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축사</u> <u>· 운동장·착유실</u> <u>· 먹이방·분만실</u> <u>및 방목지</u>를 --. 4. ----- ----- ----- ---- <u>물질로서 농림</u> <u>축산식품부령이 정</u> <u>하는 기준</u>----- ----- -----. 5. ----- ---- <u>액체 상태</u>----	2. (개정안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 5.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-

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
6.·7. (생 략)

제3조 (가축사육 제한구역) 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(이하 "제한구역"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4.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(젖소 포함), 돼지, 말, 사슴 및 5마

6.·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가축사육 제한구역) ① 법 제8조제1항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읍·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가. 소, 젖소, 돼지,

6.·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 (개정안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읍·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가. 젖소, 돼지, 말,

<u>리 이하의 개와 양, 10마리 이하의 닭,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</u>	<u>말, 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</u> <u>나. 개, 양(염소 등 산양 포함) :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</u> <u>다. 닭, 오리, 메추리 :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</u> <u><신 설></u>	<u>사슴 :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</u> <u>나. · 다. (개정안과 같음)</u>
5.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법용 가축	5. ----- ----- 주 택----- ----- -----	<u>라. 소 : 10마리 이하</u> <u>5 . (개정안과 같음)</u>
6. ·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6. · 7.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등의 청결을 항상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(危害)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u>	6. · 7. (현행과 같음) <u>③ (개정안과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아니한 가축</u>	<u>④ (개정안과 같음)</u>

	<u>사육자에 대해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 1. <u>가축사육의 금지</u> 2. <u>가축사육에 따른 분뇨의 처리</u> 3. <u>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	
③ <u>가축사육 제한지역</u>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·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·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<u>아니</u>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	⑤ ----- <u>제한구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아니</u>하다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2(변경·해제 절차)</u> <u>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</u>	⑤ (개정안과 같음)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2 (개정안과 같음)</u>

<신 설>

제6조(처리장 사용료 등)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천재지변,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

③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조(처리장 사용료 등) ① 처리장 사용료

-- 공공처리시설 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별지 서식 -----

-----.

③ -----

-- 가축분뇨의 긴급 -

----- 전액 감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 (개정안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면-----.	
	④ <u>처리장 사용료는</u>	④ (개정안과 같음)
	<u>별표 2와 같다.</u>	
제8조(사용료 감면 등)	제8조(사용료 감면 등)	제8조 (개정안과 같음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축산농가가 <u>가</u> <u>축분뇨 공공처리시설</u> 을 이용한 경우에 사 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.	① ----- ----- ----- 공 <u>공처리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.	
1. 가축사육면적이 50 제곱미터 미만인 소 규모 <u>축산농가</u>	1. ----- ----- ----- <u>축산농가의</u> <u>경우 : 100분의 50</u>	1. (개정안과 같음)
2. 축산농가의 가축분 뇨처리시설이 천재 지변 또는 자연재해 로 인하여 파괴 또 는 붕괴된 <u>경우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:</u> <u>전액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3.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 축분뇨의 긴급한 처 리가 필요한 <u>경우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<u>: 전액</u>	3. (개정안과 같음)
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<u>자</u>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경</u>	4. (개정안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농가 소재지의 읍·면·동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 호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제9조(준용규정) <u>수수료,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u> 제10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 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우</u> ② 제1항에 따라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9조(준용규정) 이 <u>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u> 제10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-- ----- 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제9조 (개정안과 같음) 제10조 (개정안과 같음)
---	--	--